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4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6. 3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신규 임용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보 해제 특별휴가 신설(안 제24조제17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~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4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정규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⑯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⑯ (현행과 같음) <u>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조아라
연 락 처	02-3153-8215